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사건정보 요청근거 마련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984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사건정보 요청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사건정보 요청근거 마련

개정안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생략) <u><신설></u>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절차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개정안은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

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하는 고충이 있으므로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사건정보를 직접 경찰로부터 받게 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경험 등을 반복하여 진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상담자가 상담 전에 사건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상담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되,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하고 긴급상담이 주요 업무인 1366센터는 경찰에 사건정보를 사실상 요청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어 사건정보 요청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수용하는 입장임.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정보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²⁾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

-
-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

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³⁾를 참조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